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5.9.2(수) 10:00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 
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 
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인수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3. 제안 이유

-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,
- 2014년 5월 「지방재정법」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농산물 생산, 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 등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개정 및 법령조항 삽입  
(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18조, 안 제21조, 안 제22조)

나. 발작물 재배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조사업 지원근거 신설  
(안 제10조제7호)

다.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, 산림자원 및 임업생산지 청정환경 유지

를 위한 산불·병해충방제·사방 등 재해예방 및 방제사업 지원,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·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, 농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, 토론, 연찬회 등 지원, 농어업 정보지 지원 등의 지원근거 신설(안 제11조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'은 상위법령 이었던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과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은 물론,
- 2014년 5월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